

의안
번호

290

월곡청소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월곡청소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4. 06. 04.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 나. 의안번호 : 제290호
- 다. 제출일자 : 2024. 05. 23.
- 라. 회부일자 : 2024. 05. 28.

2. 제안이유

- 우리구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적 표현과 창작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기회 확대를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위탁·운영중인 월곡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2024.8.31.)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현황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종사자	소요예산 (‘24년기준)	現)위탁기관
					협약기간
월곡청소년 센터	성북구 화랑로13가길 110 (하월곡동)	1,463㎡ (지하1층 ~지상3층)	8명	586,181천원(계) 12,684천원(국) 573,497천원(구)	(사)한국청소년재단 (관장:정진희)
					21.9.1.~24.8.31.

나. 위탁운영 개요

- 위탁기간 : 3년(2024.9.1. ~ 2027.8.31.)
- 위탁사무: 「월곡청소년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 전국 최초 아동친화도시 구축에 따른 아동권리 보호 및 참여권 보장
 - 지역 내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및 환경 개선
 -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 및 여가를 위한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개발
 - 성북구 지역특성을 활용한 “성북 특화 프로그램” 발굴·개발
 - 청소년카페, 동아리실등 청소년 휴식·활동을 공간 조성·운영
 - 지역 내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교육
 -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정보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 그 밖에 성북형 아동·청소년 문화공간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다. 민간위탁운영 성과평가 결과 : 적정

4. 참고사항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5. 검토의견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월곡청소년센터'(이하 "청소년센터"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대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계속하여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내용

- 2024년 8월 31일 자로 '청소년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체를 대상으로 운영성과 평가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3년간 재계약을 추진하려는 것임. 위탁대상 현황 및 운영실적은 아래와 같음.

월곡청소년센터 위탁 현황

□ 시설개요

- (위탁기간/위탁기관) 3년('21.09.01.~'24.08.31) / (사단법인 한국청소재단 관장 : 정진희)
- (소재지) 성북구 화랑로13가길 110
- (시설규모) 부지 1,046㎡, 건물 1,464㎡

층별	연면적(㎡)	운영 시설
지상3층	383	팀플실(2), 소회의실,활동실(2), 상담실(2), 지도자실
지상2층	383	대강당, 밴드실, 미디어실, 오픈스튜디오, Maker WG
지상1층	386	청소년아지트, 푸름, 운영위원회실, 통합사무실
지하1층	310	CAFE W, 활동실(1), 열린주방

□ 운영현황

- (종사자 현황) 8명
- ('24년 예산) 586,181천원(국비 12,684 / 시비 573,497)
- (주요사업) 7개 사업 13개 프로그램

< 운영실적 >

연도	구 분	청소년 목적사업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대관사업	기타	계
2024.4.	프로그램	10	1(24)	2	-	-	13(24)
	참여인원	8,345	2,456	359	88	-	11,248
2023	프로그램	13	1(48)	11	-	-	25(48)
	참여인원	34,440	5,658	9,431	739	-	50,268
2022	프로그램	21	2(39)	10	0	1	34
	참여인원	25,583	3,707	6,442	0	4,457	40,189

다. 민간위탁 및 재계약 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1)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2)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청소년단체에 3년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민간위탁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 「민간위탁 조례」 제3항3)에서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한 후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계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 추진은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 1)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3년 범위에서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계약체결 등) ③ 구청장은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제8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청소년센터”의 재계약 추진을 위해 실시한 운영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 따르면 평균 89.4점으로 준수한 편으로 위탁사무의 수행을 무리없이 수행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성과평가 결과>

연번	평가영역	배점	점수	연번	평가영역	배점	점수
1	운영 및 관리	10	8.82	5	시설기준 및 안전	19	18.8
2	청소년 이용 및 참여	16	15.4	6	대외협력 및 홍보	5	3.75
3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20	19.2	7	종합 평가	10	9.95
4	인사 및 조직	20	17	총점		100	89.4

또한, 2022년과 2023년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 청소년정책활동 및 예술 활동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됨.

라.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이며, 구의회 동의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재계약을 추진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법규 절차대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